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96
----------	------

2017년 11월 2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9월 7일, 이명희 의원 (찬성자 10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11월 27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명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 할 때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

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2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관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1)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정 성별이</u> <u>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u> <u>구성한다.</u>

-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황

-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이하 '조례') 제21조2)에 따라 시장이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위원 구성³⁾은 내부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이고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명 및 행정2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음.
- 2014.4.1일, 1기 총 39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38명)이 구성되었고, 2016.4.1일부터 현재까지 2기 총 43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38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음.

2) 제21조(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관한 사항
3.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빗물분담량 산출
5.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6.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
7.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
8.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
9. 지하수의 보전·관리·조사·개발·이용
10.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보전
11.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제22조(구성)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수리지질, 응용 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물순환 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한다

■ 법정 성별 구성범위(특정 성별 6/10 초과금지) 반영 건

- 현행 조례는 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단순히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성별의 구성범위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조례 시행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 그러나 서울시는 위원회의 특성상 관련분야 여성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위원회 구성 시마다 40%이상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 실제로, 1기 위원회는 남성 58%, 여성 42%이었으나, 2기는 남성 60.5%, 여성 39.5%로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상황임.

[표 2]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원 성별 현황

구분	임기	위원회 구성 현황		
		총원	남성(비율)	여성(비율)
1기	2014.4.1.~2016.3.30.	38	22명 (58%)	16명 (42%)
2기	2016.4.1.~2018.3.30.	38	23 (60.5%)	15 (39.5%)

-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⁴⁾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

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본 개정안은 이 단서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을 함께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3] 수정안 조문대비표(안 제22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정 성별이</u> <u>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u> <u>구성한다.</u>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u>특정 성별이</u> <u>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u> <u>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u> <u>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u> <u>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u> <u>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u>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참고로, 법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실무위원회가 지방위원회가 아닌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위원회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법정 성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간과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운영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락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 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함.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석)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96
----------	------------

제안일자 : 2017년 11월 27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함.
(안 제22조제2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2항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u>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
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p>	<p>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